

학생상담규정

제 정 2012. 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이 대학생활 중 직면하는 학업, 인간관계, 가치관 정립 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학생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돕고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학생상담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커리어코치라 함은 학생상담을 담당하는 지도교수(이하 '커리어코치'라 한다)를 칭한다.
2. 학생상담이라 함은 학생의 학업, 진로, 취업 등의 대학생활에 관한 모든 상담을 의미한다.

제3조 (내용) 커리어코치는 다음 각 호에 맞는 학생상담을 진행한다.

1. 일반상담
2. 진로상담 및 지도
3. 취업상담 및 지도
4. 학업부진상담(학사경고) 및 지도
5. 학교생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상담 등

제3조 (운영) ① 학생 상담에 관한 커리어코치의 배정과 상담의 진행은 해당 학부(과) 교수들의 회의를 통하여 지도학생을 배정하며, 상담은 커리어코치가 진행한다.

- ② 학생상담결과는 학기별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담당학생이 졸업 시까지 관리하도록 한다.
- ③ 학생상담과 관련된 학과별, 교원별 상담실적결과 등 전반적 사항은 학생복지처에서 총괄한다.
- ④ 학생상담 내용은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 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학 유관 전문조직으로 연계하여 지도, 관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